

의안번호	2219138
의 퇴 인	이종배 의원
회 답 일	2026.7.23.
추계번호	26B277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1조의 3(사용자의 긴급 조정신청 및 대체근로 허용 등) 신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1. 쟁의행위가 제42조에 따른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그 업무의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규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의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의무규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4항)	의무규정
		제4항에 따른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5항)	의무규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하여야 한다.(제6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1조의3 (사용자의 긴급 조정신청 및 대 체근로 허용 등)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기간 중에 한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긴급조정신청 물량이 증가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수와 이로 인한 중앙노동위원회 긴급조정신청 건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는 이로 인한 신규 채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근로감독관의 정원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고, 조직 및 정원의 확대는 공무원에 대한 인력운용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기간 중에 한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대체근로 및 도급·하도급이 실현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대체근로의 여부와 규모, 대체근로 형태 및 임금 등에 영향을 받으며, 도급·하도급의 시행 여부 및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공무원 및 교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필수)공익사업¹⁾으로 지정되어 쟁의행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2)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